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616 발의연월일: 2022. 12. 2.

발 의 자:한무경·권명호·김미애

김성원 · 김영선 · 노용호

엄태영 · 윤창현 · 이채익

임이자 · 홍문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을 거쳐 대기업까지 원활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모험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벤처투자시장 조성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투자 대상 탐색의 어려움과 비상장 투자정보 부족, 투자손실위험 등 투자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투자 목적의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로서, 전문성과역량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탈 또는 자산운용사 등이 운용하므로 민간 출자가 모집이 용이하며, 자펀드에 분산 출자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이에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요건을 정하고, 결성·등록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 도입(안 제63조의2 신설)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목적으로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으로 정의하고,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 및 벤처투자조합 출자 비중 등을 명시함. 아울러,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자율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 사항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을말한다.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 자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 자
-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 ③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④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3 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7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 이상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재 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 율 및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⑥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벤처투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 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 부렁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3조의2(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
		조합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
		서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
		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벤처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
		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
		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중소벤
		처기업부렁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대규모재간접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
		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될 수 있다.
- ④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 자금액의 7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 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것의에는 벤처투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대규모재간접벤 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방법 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렁으로 정한다.